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관제업무의 종류에 따라 철도관제 관제자격증명과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위반 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관제자격증명 종류를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과 도시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업무별로 이원화(안 제20조의2)
- 나. 제20조의2 신설에 따라 종전 제20조의2를 제20조의 5로 조문 변경
- 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4 별표 4의3 제2호 라목을 신설)

라.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3조 제1항 제6호의9를 제6호의10으로 이동하고, 제6호의9 신설)

마. 과태료 부과기준(별표6 제2호 어의2목의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철도운영기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0조의2를 제20조의5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관제자격증명 종류)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관제업무의 종류별 관제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제2호에 따른 관제업무를 포함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철도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도시철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63조(업무의 위탁) 제1항 제6의9를 제6의10로 이동하고, 같은 조·항 제6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9.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조의2(관제자격증명 종류)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관제업무 의 종류별 관제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제2호 에 따른 관제업무를 포함한 「철 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철도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도시철도법」 제2조제2항에 따 른 도시철도의 관제업무에 종사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0조의5 (현행 제20조의2와 같 음)
제20조의2(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생 략)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 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u>제38 조의14</u>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 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63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 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u>제 38조의15</u>에서----- ----- -----. 제63조(업무의 위탁) ① -----

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 6의8. (생략)

<신설>

6의9. (생략)

-----.

1. ~ 6의8. (현행과 같음)

6의9.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

6의10. (현행 제6의9와 같음)

[별표 4의3]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백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38조의13 제3항 제4호를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 제4호	15	50		
2) 법 제38조의13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 제5호	15	50		
3) 법 제38조의13 제3항 제6호를 위반하여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 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 제6호	5	15	30	50
4) 법 제38조의13 제3항 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 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 로 평가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 제7호	15	50		

■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1. 19.>

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삭제 <2020. 10. 8.>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호	300	600	900
나. 법 제7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호	150	300	450
다. 법 제8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2호	300	600	900
라.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 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1호	90	180	270
마. 법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법 제82조제1항	300	600	900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2호의2			
바. 법 제20조제3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4호	90	180	270
사.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2호	150	300	450
아. 법 제24제3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전자 등이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2호의2	150	300	450
자. 법 제26조제2항 본문(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4호	300	600	900
차. 법 제26조제2항 단서(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3호	150	300	450
카. 법 제26조의5제2항(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5호	300	600	900
타. 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6호	300	600	900
파.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7호	300	600	900
하.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	법 제82조제1항	300	600	900

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8호			
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9호	300	600	900
너.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않고 개조한 철도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4호	150	300	450
더.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2) 이력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9호의2	300	600	900
러. 법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5호	150	300	450
머.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9호의3	300	600	900
버.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6호	150	300	450
서. 법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9호의4	300	600	900
어. 법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9호의5	300	600	900
어의2. 법 제38조의12제2항 후단을 위반	법 제82조제1항	300	600	900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제9의6호			
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 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0호	300	600	900
처.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 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0호의2	300	600	900
커. 법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 반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7호	150	300	450
터. 법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 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5항 제1호	15	30	45
퍼. 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 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 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8호	150	300	450
허.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82조제4항 제1호	30	60	90
고. 법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 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5항 제2호	15	30	45
노.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객열차에 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 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8호의2	150	300	450
도.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 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 입하거나 통행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9호	150	300	450
로.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	법 제82조제4항 제2호	30	60	90

모. 법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0호	150	300	450
보.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3호의2	300	600	900
소.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1호	150	300	450
오.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4호	300	600	900
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5호	300	600	900
초.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2호	150	300	450
코. 법 제6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5호	300	600	900
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6호	300	600	900
포.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7호	300	600	900
호.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8호	300	600	9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825